##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2

발의연월일: 2021. 3. 24.

발 의 자:최종윤·강득구·강민정

김민철 · 김진표 · 김회재

박홍근 • 양경숙 • 오영환

이규민 · 이용빈 · 이원택

조오섭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관련 조항(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)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최고·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(제36조제7항)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 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·최저 보상기준금 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

항).

법률 제 호

#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"을 "제5조제2호, 제36조 제6항 및 제7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위로금의 지급 기준) ①	제25조(위로금의 지급 기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	②
진폐재해위로금은 「산업재해	
보상보험법」 제5조제2호 및	<u>제</u> 5조제2호, 제36조
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	제6항 및 제7항
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	
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	
로 한다.	